

##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오산시의회의장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길용 의원 대표발의)

#### 1. 제안이유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경력직공무원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 및 연가일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 4)
- 나.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다.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관련 내용 수정(안 제18조제4항)
- 라. 포상휴가 중 선거사무종사자 근무 내용 신설(안 제18조제4항제6호)
- 마.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안 제18조제5항제1호)

- 바.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안 제18조제11항)
- 사.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 휴가 부여(별표 5)
- 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조항 신설(안 제21조)

### 3. 조례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9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1, · 팩 스 : 031)3036-8953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7일 이상일”을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 차례만 6일 이내”를 “연 6일 이내(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의 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의 “2일 가산”을 “3일 가산”으로 한다.

별표 5의 출산란의 일수란을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1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u>2년 미만</u>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p> <p>&lt;신 설&gt;</p>	<p>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u>5년 미만</u> ----- ----- ----- -.</p> <p>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17조(병가) ①·② (생략)</p> <p>③ 병가 일수가 <u>7일 이상일</u>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7조(병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연 6일을 초과하는</u> -----.</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p> <p>④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u>6일 이내</u>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lt;신 설&gt;</p>	<p>제18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연 6일</u> <u>이내(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의 합)</u>-----.</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p>

⑤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1. ~ 3. (생략)

⑥ ~ ⑩ (생략)

<신 설>

<신 설>

⑤ 5년 -----  
-----  
-----  
-----.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  
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